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729호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(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581호)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.

2024년 12월 20일

국토교통부 장관

1.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

대상지역			면적(k㎡)	비 고
합 계			18.09	
경기도	하남시	덕풍동, 신장동, 창우동, 춘궁동, 천현동, 교산동, 향동 상사창동, 하사창동	18.09	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지정 (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)

-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

2.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

대상지역			면적(k㎡)	비 고
합 계			27.81	
경기도	남양주시	진접읍 연평·내곡·내각리 진건읍 신월·진관·시능리 다산·일패·이패동	27.81	

- 허가구역 해제일자 : 2024년 12월 26일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0m ² 초과
	상업지역	150m ² 초과
	공업지역	150m ² 초과
	녹지지역	100m ² 초과
	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	60m ² 초과
도시지역 외의 지역	농 지	500m ² 초과
	임 야	1,000m ² 초과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0m ² 초과

4. 허가구역 해제 토지조서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에서 확인*

* 뉴스·소식-공지사항-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

*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는 기존과 동일하여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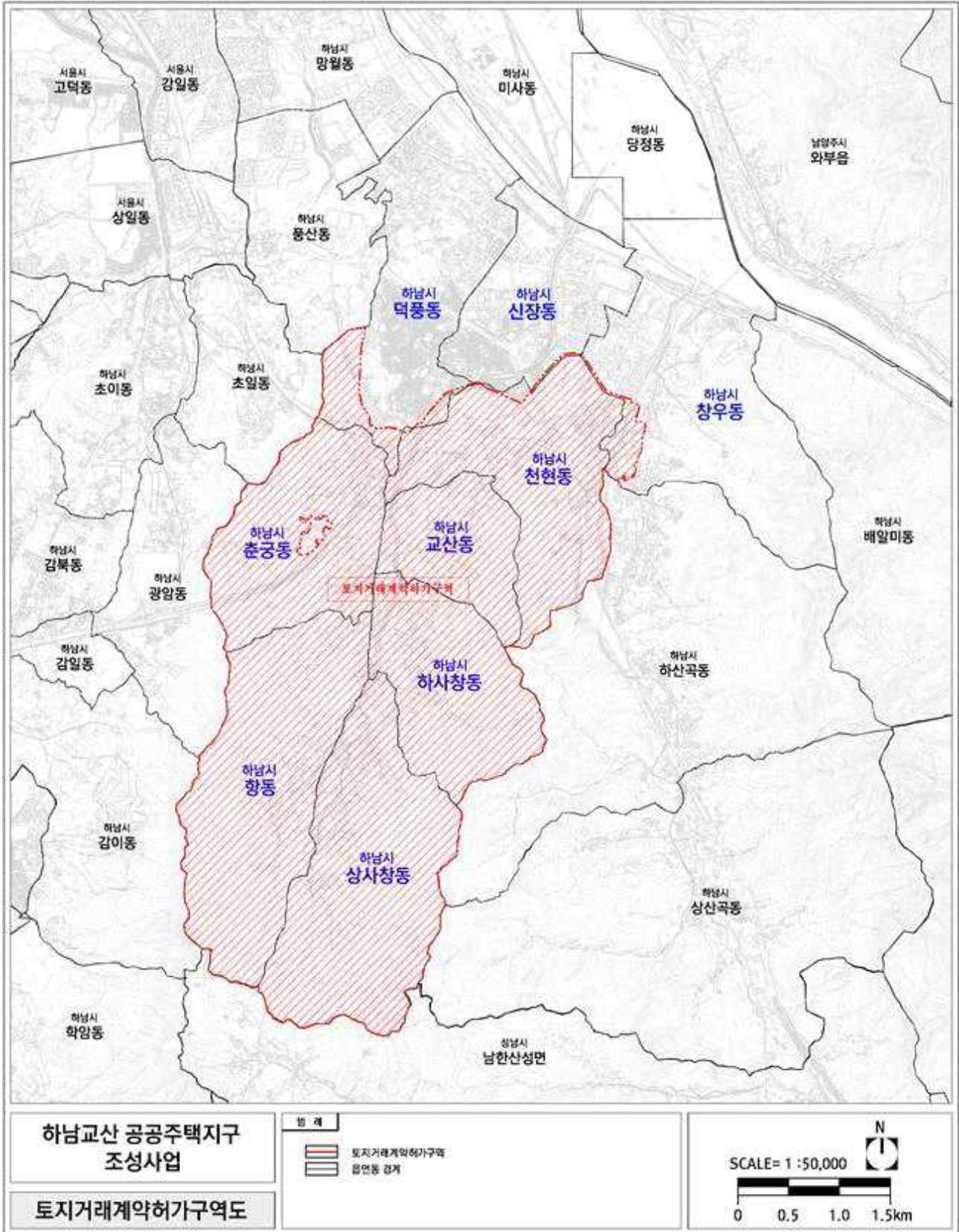
* 해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함

5. 허가구역 재지정·해제 현황도면 : 붙임1 참조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

[붙임1]

〈 (재지정)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〉



< [해제] 남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>

